



自然保護 斷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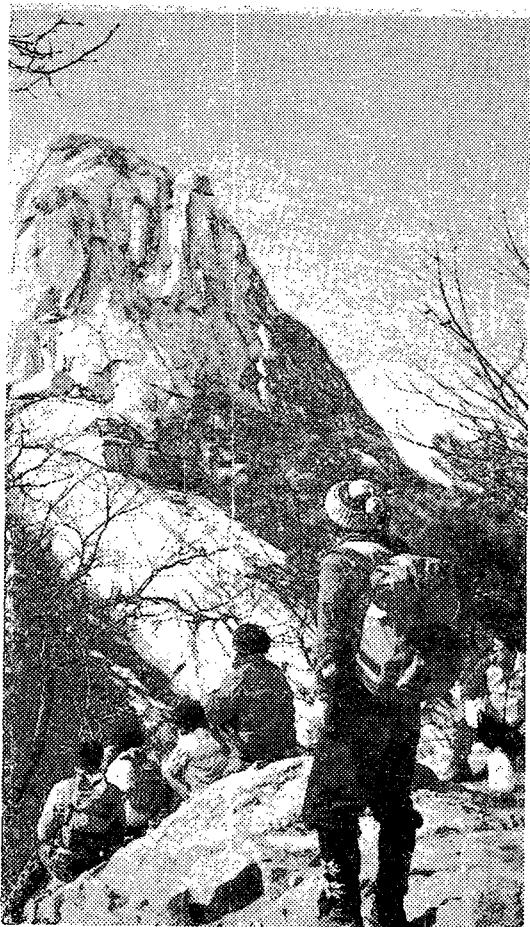
경희大법대학장。本報편집위원
法博 구연장

얼마전 주말에 북한산엘 다녀온 적이 있다. 오르는 길에 「자연보호」라는 큰 표지판이 눈에 띠었다. 표지판에는 자연보호라는 제목하에 자연을 「자기재산」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자는 호소가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어 보면서 문득 자연은 누구의 재산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시민이 어느 정도의 注意義務를 지는 것인가를 얼핏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의 관리·이용·보전에 있어, 지게 되는 주의의무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재산에 관한 것과 같은 주의의무이다. 전자는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았거나 보관·이용하는 경우에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은受住人이나, 타인의 물건을 관리위탁받은受置人,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진 자나後見人등이 지는 주의의무가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기재산에 대한 주의의무는 그 주의의구의 정도를 낮추어 통상 자기재산의 관리에 쏟는 주의정도면 족한 것으로 하고 있다. 민법상에서는 자기소유의 재산에 대한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위탁받은 자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분리전에 상속인에게 요구되고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지만 자기재산에 대한 주의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게 된 경우를 사무관리라 하며, 사무관리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쓰아 가장 본인에게





66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 풍족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풍요한 정신성을 배양시킴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함이 필요하다

99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만약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온 가족이 문을 닫아걸고 여름바캉스를 떠났는데 그집 수도관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이웃사람이 부탁받은 일은 없지만 그집에 들어가 수도관을 고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민법상 아무런 관리의무나 주의의무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여도 무방한 것은 결코 아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연 내지 자연환경은 거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국유 내지 공유의 광대한 자연은 지금까지 마치 주인 없는 물건같이 인식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 개인의 물건은 항상 주인이 지켜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잘 유지·보전이 된다. 국공유의 광대한 자연은 無主物같이 생각되어 다소 훼손하는 일이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자기의 물건은 잘 관리·보전하면서 남의 것은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된 것 같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다 이기적으로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진 느낌이 든다. 하물며 無主物같이 보이기 쉬운 자연에 대해서는 오죽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족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풍요한 정신성을 배양시킴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함이 필요하다. 자연은 인간생활에 생명을 부여해 준 모태이며, 단지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풍요한 인간생활의 불가결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자연환경은 ①국토보존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②자원의 공급원이 되고, ③인간성의 배양 내지 보건휴양의 장소로서의 효용이 있고, ④환경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며, ⑤학술연구의 장소로서의 효용을 가지는 등 우리 인간에 있어 그 의미는 정말로 크고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자연환경을 그 자체로서 보전·보호하지 않으면 아니될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각국이 예외없이 자연환경을 보전·보호함에 간단없는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 내지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정이 잘 말해 주듯이 자연이나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존·보호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연환경을 포함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상해낸 것이 이른바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인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인정되면 국가나 국민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보호할 의무가 생기게 되어, 환경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보호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렇게 볼 때, 등산길 옆에 세워진 표지판에서 자연은 자기재산과 같이 생각하여 아끼고 보호하자는 호소는 의의있게 받아들여진다. 자연환

66

자연환경을 자기재산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 보전될 것인가

99

경을 자기재산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 보전될까! 자기집 둘의 나무가지를 함부로 쭉어버리거나 자기집 마당이나 방에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버렸다치더라도 곧 깨끗이 치우는 것이 보통이다. 타인의 재산보다 알뜰하게 보전·보호하는 성향을 가진 것은 틀림없다. 개인소유의 산림이나 사찰의 산림들이 가장 잘 보호 보전되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재산이고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또한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유의 산림이나 하천에 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지고 있다. 문제는 너무나 그것이 광대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진 인적요원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재산에 대한 관리의 결과보다도 훨씬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민이나 등산인, 관광객 모두가 자연을 자기재산과 같이 관리·보전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자연보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금까지 벌여온 것도, 그리고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온 것도 그 궁극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등산로 옆에 서있는 자연보호 표지판의 호소도 곧 이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들의 시민들은 이미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 반하여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시민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주말을 지낸 산하가 온통 비닐, 쓰레기, 깨진 빈 병등으로 널려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한다. 우리 국민들도 하루빨리 자연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정착되어, 산불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게 되고, 깨끗한 산하가 유지·보전됨으로써 선진국의 예를 부러워 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한다.

물론 자연애호가나 자연보호론자들이 오랫동안 자연보호의 사무관리자로서 적잖은 역할을 해왔고, 그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범국민운동도 계속되어야 하고, 국민학교에서 철저한 자연보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불가결하고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잠정적인 방안으로 마치 도로교통에 있어 교통안전과 계몽의 효율화·광범위화를 위하여 양식있는 자가운전자에게 교통지도요원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평있는 등산단체의 구성원이나 낚시단체의 회원에게 자연보호지도회원증을 발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연보호의 사무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

환경의식 드높일때 나라힘도 강해진다